

일본 석유산업의 최근 동향

본 자료는 일본 석유연맹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오늘의 석유산업』(2010년 4월 발간)의 내용 일부를 발췌 편집하였음. - 편집자 주 -

조민수
대한석유협회
연구조사팀 대리

중장기 국제 석유시장 전망

향후 국제 석유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하는데 있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수급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인구규모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볼 때 수급과 가격면에서 향후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2009년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중국·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세계 석유수요가 2008년~2030년 사이에 연평균 1.0%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할 때 석유 수요 1억 5.2백만 배럴/일 중에서 중국은 3.5% 늘어난 16.3백만 배럴/일, 인도는 3.9% 증가한 6.9백만 배럴/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 국제 석유 수요 전망

국·地域	年	1980	2000	2008	2015	2030	2008-2030 ^(1,2)
북미		20.8	22.9	22.8	22.2	21.8	-0.2%
아메리카		17.4	19.0	18.5	17.9	17.2	-0.3%
유럽		14.4	13.6	13.0	12.2	12.0	-0.4%
태평양		6.1	8.2	7.4	6.8	6.2	-0.8%
일본		4.8	5.3	4.5	3.8	3.1	-1.6%
중·동부 아시아		9.0	4.2	4.6	4.7	5.3	0.6%
인도		—	2.6	2.8	2.8	3.1	0.5%
중국		4.4	11.2	15.8	19.6	30.7	3.0%
한국		1.9	4.6	7.7	10.4	16.3	3.5%
미얀마		0.7	2.3	3.0	3.8	6.9	3.9%
이라크		1.1	3.0	3.5	3.8	5.3	1.8%
이라크		1.9	4.5	6.4	7.6	9.9	2.1%
아프리카		1.2	2.2	2.9	2.9	3.7	1.1%
중동		3.4	4.5	5.3	5.4	6.6	1.0%
미얀마		1.3	1.9	2.0	2.1	2.8	1.4%
미얀마		3.4	5.2	6.5	7.0	8.9	1.5%
EU		64.8	76.5	84.7	88.4	105.2	16.0%
EU		—	12.9	12.4	11.7	11.3	-0.4%

(注) 1. バイオ燃料需要は含まない。

2. 総額平均

出所 IEA「World Energy Outlook 2009」(世界エネルギー見通し)

세계 석유수요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약 1.2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데에는 중국과 인도 2개국에서 약 2.2배 증가하고 세계 전체 수요에서 이들 두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로부터 20%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분은 OPEC 회원국의 공급량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이 OPEC회원국 의존도가 향후 유가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석유 수요 감소의 구조적 요인

2008년 일본 석유 수요는 연료유 기준으로 약 2억100만㎘를 간신히 유지하였지만, 작년도(2009년) 석유 수요는 전년(2008년) 대비 8%를 밑도는 등 일본 석유 수요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8년도 하반기는 리먼 쇼크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침체에 의해 일본 생산활동 및 개인소비에도 큰 타격을 주어 연료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이상도 밑도는 큰 폭의 수요감소가 발생했다. 총 연료유 수요량은 1999년에 2억 4,597만㎘로 정점을 기록하고 구조적인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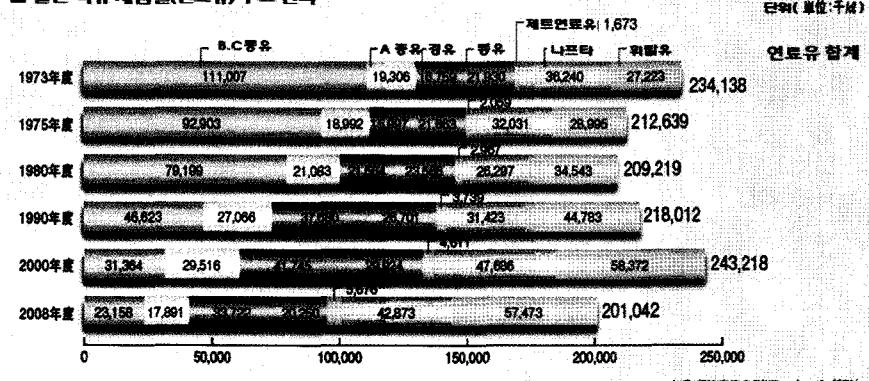
소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종별로 보면, 휘발유는 2004년도에 6,148만㎘, 등유는 2002년도에 3,062만㎘가 수요 정점이었다. 또한, BC중유의 수요정점은 1973년도에 1억 3,031만㎘였다. 이러한 석유수요의 구조적인 감소 요인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①탈(脫)석유화 정책 추진, ②사회구조의 변화, ③지구온난화 방지를 들 수 있다.

휘발유는 2008년에 동기간을 비교해 보면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소매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석유소비 절약정신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 그간 석유 수요가 감소했던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유는 전년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영향으로 중유 특수가 사라지면서 대폭 감소하였다.

점차 중요해지는 석유비축

석유는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존도는 2008년을

■ 일본 석유 제품별(연료유) 수요 변화



■ 석유 수급 균형(2008년도)		年版	2007	2008	전년 대비 (%)
项目					单位:千㎘
需求	輸入量	11,718	11,544	98.5	
	原油	217,889	208,759	95.9	
	精製油	32,102	29,327	91.4	
	輸出量	249,799	238,086	95.3	
(盈余)	内需	218,487	201,042	92.0	
	貿易	29,001	34,153	117.8	
	輸出	247,488	235,105	95.0	
	原油輸入	11,544	11,793	102.2	

(注)バランスは品種振替、ロス、その他で一致しない

出所:資源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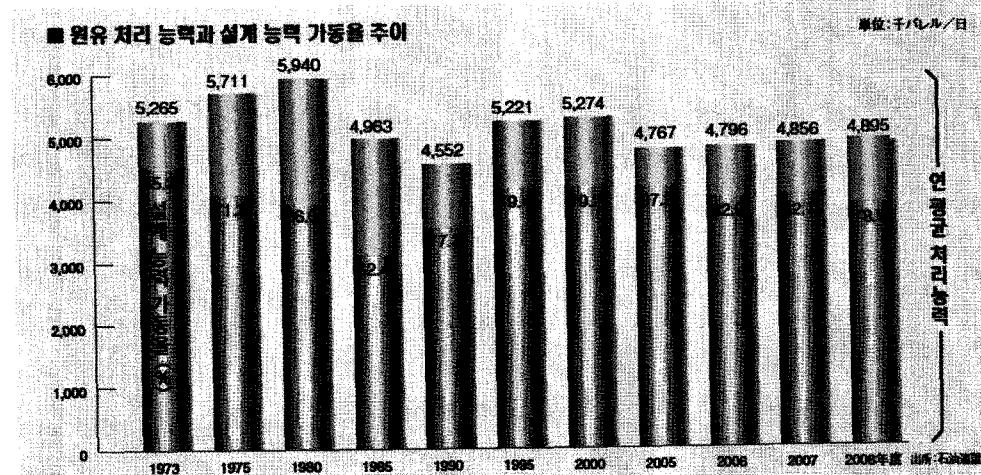
기준으로 약 88%, 제1차 오일쇼크 직전인 1972년에는 8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IEA가 발족하였고 회원국 각 국에 90일분의 석유 비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일본은 1975년에 '석유비축법'을 제정(1976년 4월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민간비축이 시작되었고 1978년부터는 석유공단을 통한 국가비축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 석유비축 규모는 원유로 약 5,100만㎘, 민간비축은 70일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일

본 전체로 보면 197일분 (8,364만㎘: 2009년 12월말 현재)의 비축분이 있다.

결프만에 위기가 있을 무렵, 일본의 비축량은 142일분(1990년 12월말)으로 꽤 많은 양의 비축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 내적으로는 이 위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고 따라서 석유 공급 및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비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IEA의 '비상상황시 협조적 대응조치' (CERM)에 근거한 대응책으로 IEA 회원국 전체가 하루 250만 배럴(40만㎘/일)을 석유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결정하는 등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데 이때 일본도 1991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4일분(250만㎘)의 민간 비축 분을 방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 8월말 미국 남부를 습격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대책으로 IEA 회원국 모두가 200만 배럴을 30일간 총 6,000만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결과적으로, 동(同)조치로 인해 당초 전체 공급 예정량에 변경됨이 없이 12월22일까지 계속되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민간비축분도 약 3일 분을 석유 시장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최근 국제 석유 정세 변화(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석유수요의 증대, OPEC의 잉여생산 능력의 저하, 지정학 상의 불안정성 등을 배경으로 한 원가 급변 등)로 인해 일본 석유수급 상황은 향후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석유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생활과 국민경제는 대단히 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전략비축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일본 석유세제에 대한 재검토

▶높은 세금 부담 = 석유는 일본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일본의 민간 석유비축분·국가 전략 석유비축분 현황(2009년 12월 현재)

민간 석유비축분	
비축일수	84일
비축량(제품환산)	3,554만㎘
비축목표	내수량의 70%
비축형태	생산 유동·정식으로 보유
비축장소	현유광장, 기지, 저유소 등의 민간탱크
비축구성	원유 약 50%, 제품 약 50%
관리주체	경쟁회사, 수입업체 등 필요하다면, 일본 비축 회사에 의한 대량이 가능
비축 석유 방출	①전유 및 재생의 형태로 대부분이 원유나 석유에 생산·유통과정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유동 공급할 수 있는 이유로 있음 ②원유의 수급 불정이나 석유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탄력적 수급이 가능 ③정단 announcement 효과적 억제다
방출사례	①제2차 석유파동(9년 3월~00년 8월) ②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월~3월 ③아프리카 기드로니 사막(09년 9월~12월)
재정지원 조치	생산구입 지원, 평화 건설 등을 지원
비용부담	제품 비용의 일부를 구성최종 수요기에 전기적 길 기준

113일	4,810만㎘
5,000만㎘(원유베이스, 98년 2월달성)	
봉인방식	
①국가 석유 비축 기지 ②민간탱크	
원유 약 99.7%, 제품 약 0.3%	
①국가비축기법전체 대비 비율 약 2/3 (전국에 84~102개) ②민간석유기법전체비비율 약 1/3 (관리를 민간 기관에 위탁)	
①비축 원유의 방출은 정부의 판단으로 시행 하여 시장상의 공급이 확충하게 증가하고,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는 의미에서 큰 announcement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②기동성 면에서는 뒤떨어지지만, 기지 등의 민간탱크나 일부의 국가비축 기지의 비축 원유는 신속한 방출이 가능	
없음(방출 훈련에 따르는 교체만)	
정부가 부담석유 석탄세)	
제원이 되는 석유 석탄세는 제품 비용의 일 부 구성(최종 수요기격에 전기적 기준)	

그러나 석유 세수로 년간 약 4조3,000억엔(2010년도 예산)에도 달하는 높은 세금이 확보되고 있으며 여러 판매단계를 거치면서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 과세는 먼저 석유제품 원료인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단계에서 관세(석유수입 제품만)와 석유석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까지 매 단계마다 휘발유세(휘발유세 및 지방세 휘발유세), 경유인수세, 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라고 하는 개별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세제에 부가세 약 8,400억엔(석유제품 매상고의 5% 상당분)을 추가하면, 석유와 관련된 세금은 약 5조1,400억엔이 된다. 이렇게 석유에 부과된 세금은 석유 수입량 1배럴당 약 37달러(환율: 95엔/달러)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걷어지는 석유세 부담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 상승을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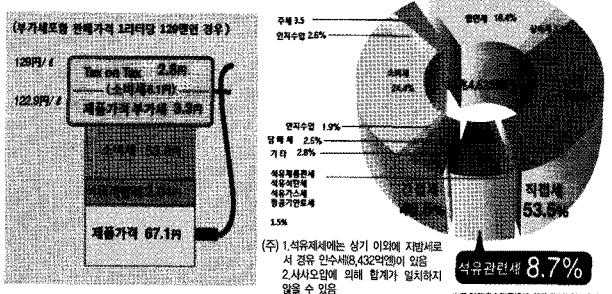
래함으로써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불합리·불공정한 석유세 제 = 1989년 4월 부가세를 도입할 무렵, 석유세제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개별간접세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폐지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휘발유세를

■ 유럽과 북미지역의 석유비축제도 개요

국 가 비 속 도	비속의무자와 의무형	민간기업에 비축 의무 없음	공인 세금인정제 수입방법 비축은 설계업자(수입업체)	EUV(세무비축협회), 민간 기업에 비축 의무 없음
인 간 건 강 비 속 증	비속의무대상 증우		[공인 세금인정제] 보통하고 저작의 유무 에 의한 증인 세금인정은 전월 12개월 소비방법 20%의 범위의 유무 업무를 CPSSP에 위탁 비공인 세금인정은 모두 CPSSP에 위탁	EUV(세무비축협회), 민간 기업에 비축 의무 없음
체 화 비 속	비속 시행 주체		· 회령우 · 경유, 가정용 연료기름 · 계트 알코올 · 증우	· 회령우 · 경유, 가정용 연료료 · 경유
국 가 비 속 도	비속장		비축량 비축의 방법선택 석유 비축 전문 위원회(CPSSP, 92년 설립)이 비축을 장수하고, 인천시 관리회(KASESS, 88년 설립)이 비축 석유를 관리	EUV(세무비축협회)
국 가 비 속 도	비속방법		인간증인 세금인정 제3 항 가운데 SAGESS 비축은 500㎘, CPSSP 비축 은 민간 세금회사에 400㎘만 위탁	경년 순수익률 또는 과거 3년 평균의 성 산 순수익률의 102분 이상
국 가 비 속 도	비속 시행 주체		· 회령율 20% · 증유율 55% · 계트 알코올 7% · 증유 7% · 원유 8% (원유는 암암 등에 비해)	월별 40% · 저출 60% EUV(수입 90% (90%는 양질 품)
국 가 비 속 도	목표비속량	10억배럴		만년 평균의 10%(내용률도 대비)
국 가 비 속 도	비속방법	지하비축(암암)		

■ 1리터 당 휘발유에 부과되는 석유세 및 부가세 ■ 국가 세수에서 석유세가 차지하는 비율(2010년 현재)
(2010년 2월 현재)



비롯한 석유관련 세금들의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특정 재원」인 것을 이유로 폐지나 경감되지 않고 판매가격에 단순히 부가세를 덧붙이는 불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있었던 부가세 증액(3%→5%) 조치 때에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

2009년 4월에는 휘발유세 등이 ‘도로특정재 원제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가세와 석유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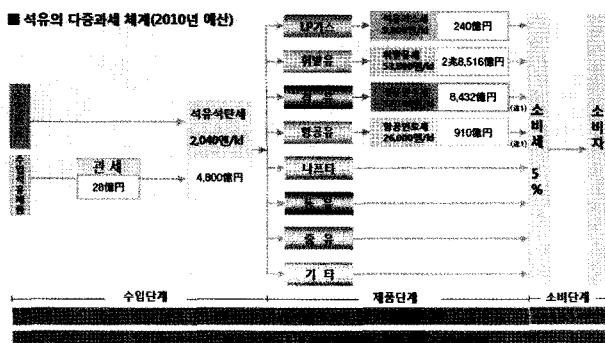
조정 조치는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석유연맹에 서는 부가세 도입 당시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정 조치, 특히 휘발유세 등의 석유세제에 부과되어 있는 부가세(소위 이중과세, 약 1,600억엔) 폐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 도로 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 =
도로특정재원을 일반재원화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8년 4
월에 일시적으로 잠정 세율의 적용
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관
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같은 해 5월 내각회의 결정 「도로특정재원등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정부 여당 합의로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이 논의되었고, 2009년 4월에 비로소 도로특정

재원은 폐지되어 일반재원화되었다. 따라서, 도로특정재원에서 삭제된 휘발유세·경유인 수세에 대해서 과세 적부를 재검토해야하며 이때 과세 방법, 대상, 용도 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로건설(道路建設) 및 유지 보수 비용은 모두 일반재원으로 조달하게 되었다. 도로는 누구든 이용 가능해서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이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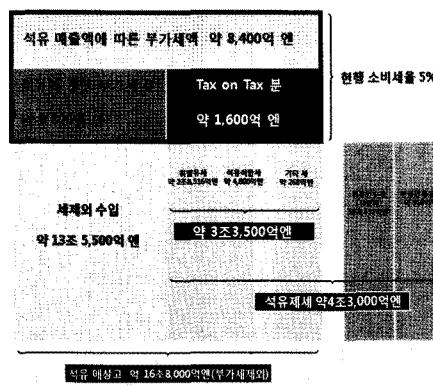


(주) 1 경유인수세와 항공기면로세에는 TAX on TAX 적용
2 석유 세탁기는 원유, 석유제품, 석탄, LNG, LPG가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
3 2005년 4월 원유관세(70%)/기름은 폐지되어 석유제품 관세만 남아있음(관세수입은 20년도 실적에 근거해 석유영업 계산)
4. 사사 오입의 관계에 의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음

■ 부가세 도입시
기준 간접세 조정 상황



■ 석유세와 부가세의 현황(2010년도 기준)



연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로의 유지 보수는 이용 수준에 따른 비용부담, 즉 원인자 부담으로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유럽 등에서도 도로이용에 따른 도로의 훼손을 그 원인인 차의 무게와 주행거리에 의해 부담하는 방법(주행 과세)를 종합적인 검토하고 있어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휘발유·경유인수세의 잠정세율 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도로정비에 필요 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논리를 펼 수 있었지만, 도로정비 비용이 일반재원으로 전환된 이후 이제 그 과세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정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 원선거에서 잠정세율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지만, 같은 해 12월에 「2010년도 세제개정 대강」에서 재원부족 등을 배경으로 '제도 자체는 폐지하지만 잠정세율 수준은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동(同) 법안에는 잠정세율 부분이 원유가격 상등 시에 과세를 중단하는 법적 단서가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는 ①일반재원에서 휘발유·경유 이용자가 보다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 ②휘발유·경유의 사용량이 많은 지방과 도시와의 부담 격차가 클 것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사용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